##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1

발의연월일 : 2021. 1. 15.

발 의 자:김정호·김병욱·김윤덕

박재호 • 박찬대 • 서동용

송영길 · 양정숙 · 어기구

용혜인 • 윤후덕 • 이광재

임종성 · 정성호 · 정춘숙

허종식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 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도 18세에 독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은 일정부분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

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 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의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4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	유로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
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u>장을 요청하는</u>
<u>정하는</u> 경우	
<u>&lt;신 설&gt;</u>	4.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
	<u>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u>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경우</u>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1
교육ㆍ <u>취업</u> 등의 지원	<u>취업 • 의료</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혀행과 같음)